

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창업 지원
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남완현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5. 8. 26.

사 회 건 설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577호로 2025년 8월 14일 남완현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정·재정적 지원, 창업 생태계 구축, 투자 유치, 교육, 경진대회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영등포구 청년들의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지원대상 및 계획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- 라. 지원사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9조)
- 마.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- 바. 표창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25. 8. 14.~2025. 8. 21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□ 제정 배경 및 취지

- 영등포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청년 인구 수 6위, 청년 비율 2위로 청년층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, 영등포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청년의 자립과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.
- 한편, 청년층에 대한 경제적 자립 지원은 고용시장 침체를 반영하여 일자리 연계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경제활동 수단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,
 - 그중에서도 창업은 고용의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,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본 조례안은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자본과 사업 경험이 부족하여 창업 초기의 진입장벽이 높음에 따라 청년층이 창업 초기의 진입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
□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2조(정의)는 ‘청년’, ‘창업’, ‘창업자’, ‘청년 창업자’ 등 용어를 세부적으로 정의하여 조례 해석의 명확성을 확보함.
- 안 제4조(지원대상)는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소재·창업 예정인 청년 창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함.
 - 이는 구민이 아니더라도 영등포구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 창업생태계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, 외부 인재의 유입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 및 기술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 등)는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, 계획에는 창업 생태계 활성화, 경영·마케팅·교육 지원, 투자 유치 등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, 청년창업지원 정책의 체계적인 방향성을 제시함.
- 안 제6조(청년 창업 지원 사업) 및 안 제7조(투자 유치 등)는 판로 확대, 역량 강화, 창업 자금 및 기술사업화 지원, 창업공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함께, 투자자 유치 노력, 정보교류 창구 마련, 공정한 투자계약 지원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 근거를 규정하였으며,
 - 이를 통해 자본·사업경험·인적 네트워크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창업자가 창업 초기의 제약을 해소하고, 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 - 한편, 안 제6조제2항에는 사업별 지원대상의 범위를 구청장이

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 이에 따라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. 참고로 현재 영등포구에서 ‘창업공간 지원’은 초기창업자(3년 이내 창업한 자) 또는 예비창업자(3개월 이내 창업 가능한자)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.

- 안 제8조(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)는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,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, 청년들의 창업 의지를 고취하고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9조(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)는 청년 창업 촉진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·단체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.
- 안 제10조(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)는 중앙행정기관·서울시·창업 관련 기관·대학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함.
- 안 제11조(표창)는 청년 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 또는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한 표창 근거를 규정함.

□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청년층이 창업 과정에서 겪는 자금·경험·정보 및 투자연계기반의 부족 등 현실적 진입장벽을 해소하기

위하여 ▲판로확대 ▲교육·컨설팅·정보제공 ▲자금·기술
사업화 ▲창업공간 지원 등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위한
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 조례 제정의
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참고 자료

1

청년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년”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.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,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.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·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8조(청년 창업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,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2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

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정부는 창업국가 건설을 위하여 신산업창업 및 기술창업(이하 “신산업·기술 창업”이라 한다)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국제화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정부는 예비창업자, 창업기업, 예비재창업자, 재창업기업 등(이하 “창업기업등”이라 한다)의 기술성, 사업성, 혁신성, 성장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는 창업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-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지역단위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, 연구기관 등 지역 내 창업 관련 기관·단체와 교류 및 협력하여야 한다.
-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